

▶ 심사규정

세계선교연구원 『선교와 신학』 연구·편집위원회 시행세칙 중,

제5조 (심사위원 구성 및 임기)

- ① 심사위원장은 본 연구원의 원장이 된다.
- ② 심사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연구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심사위원 중 2명은 교내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한다.
-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1조 (논문 투고자의 자격과 의무)

- ① 논문투고자(주저자, 공동저자 포함)는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한다. 다만 초청된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.
- ② 제출된 논문(한글 혹은 외국어)은 다른 학술지 및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본 위원회에서 정한 특집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한다.
- ④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.
특집논문은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청탁하는 것이므로 심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 단 일반논문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기에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.
- ⑤ 특집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지불하며, 일반논문의 경우는 지불하지 않는다.
- ⑥ 본 학술지는 공동저자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저자를 먼저 표기한다. 공동저자에 의한 특집논문의 경우 게재료는 편당(개인별이 아니라)으로 지급한다.
- ⑦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.

제12조 (논문 투고 절차)

- ① 투고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요령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 접수한다.
- ② 원고제출은 본 위원회로 우편 또는 이메일(mission@pcts.ac.kr)로 하며 접수된 원고는 접수사실을 통보한다.
- ③ 논문 원고제출 마감은 출판 2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.
- ④ 제출된 원고가 본 위원회의 투고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수정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수정된 원고를 15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3조 (심사지침)

- ① 접수된 모든 논문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받으며,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 평가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② 논문 심사를 엄정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, 심사결과에 의한 종합평가 판정 기준, 그리고 판정 후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③ 심사위원들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.

논문 심사 평가서

논문 제목				
제 출 자				
주제 (논문분야)				심사일
분류	평가 항목	평가 내용		배점
				결과
형식 심사 (25)	논문의 구성 (10) (서론, 본론, 결론 전개 및 목차의 흐름)	10. 9. 8. 7. 6. 5. 4. 3. 2. 1		P . NP
	논문의 분량 (5) (본문 10-15페이지 내외)	5. 4. 3. 2. 1		P . NP
	영문초록 유무와 분량 및 적절성 (5)	5. 4. 3. 2. 1		P . NP
	집필지침 이행여부 (5) (각주/참고문헌/주제어/ 약력/맞춤법 등)	5. 4. 3. 2. 1		P . NP
	소 계			
내용 심사 (75)	독창성/참신성 (15)	15. 13. 11. 9. 7. 5. 3. 1		P . NP
	전공분야의 학문적 기여도 (15)	15. 13. 11. 9. 7. 5. 3. 1		P . NP
	논지의 일관성 및 명확성/설득력 (15)	15. 13. 11. 9. 7. 5. 3. 1		P . NP
	자료사용의 적절성과 다양성 (15)	15. 13. 11. 9. 7. 5. 3. 1		P . NP
	단어선택 적절성 및 반복 유무 (10)	10. 9. 8. 7. 6. 5. 4. 3. 2. 1		P . NP
	주제에 따른 제목선정 적절성 (5)	5. 4. 3. 2. 1		P . NP
소 계				P . NP
총계				
기타 사항 주관식 종합 평가	주관식 평가를 뒷면에 계속해서 써도 무방함			
최 종 평 가 (게재 여부)	이번호에 게재(㉠) 85점 이상			확인: 편집위원장 직인
	게재 보류(㉡) 70-84점			
	게재 불가(㉢) 70점 미만			

* 각 항목마다 배점의 50% 이상을 받을 때 P 판정을 받는다.

* 배점합계가 60점 이상일 경우 P 판정을 받는다.

제14조 (심사판정)

- 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형식과 내용 및 적절성, 논리성 및 완성도, 참신성 및 독창성, 학문적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.
- ② 심사판정은 P(pass)/ N(nonpass)로 표기하며, 심사위원 4분의 3의 P(pass) 판정을 받은 논문만 게재하고, 최종평가인 게재여부는 ㉠ 이번 호에 게재 ㉡ 다음 호(수정 보완하여)에 게재(게재보류) ㉢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하고,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하여야 하며, 심사 결과는 필자 이외에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
-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.
- ⑤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할

수 있다.

⑥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자신의 논문을 본인이 심사할 수 없고, 심사자는 위원장이 선정한다. 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 (심사결과 통보)

본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사판정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투고자에게 발송한다.

제16조 (재심)

① 게재보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게재보류의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심신청을 포기한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.

② 재심의 판정은 본 시행세칙 제14조 심사판정에 준한다.